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<p>제20조의6 (추천위원회)</p> <p>① ~ ③ 생략</p> <p>④ <u>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 <p>⑤ <u>추천위원회 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추천과 동시에 만료된다.</u></p>	<p>제20조의6 (추천위원회)</p> <p>① ~ ③ <u>현행과 같음</u></p> <p>④ 삭제</p> <p>④ <u>추천위원회 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추천과 동시에 만료된다.</u></p>
<p>제34조 (위원의 선출 등)</p> <p>① 생략</p> <p>② <u>학부모위원회는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며,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 등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. 다만, 천재지변 및 5일이상의 휴학 및 휴교로 학부모전체 회의를 통하여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와 학교장이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 전원의 동의하에 학급별 1인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, 각 학급별 대표는 희망자를 우선으로 하고 희망자가 미달인 경우 학교장이 지명한다.</u></p> <p>③ ~ ⑥ 생략</p>	<p>제34조 (위원의 선출 등)</p> <p>① <u>현행과 같음</u></p> <p>② <u>학부모위원회는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며,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 등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. 다만, 천재지변 및 5일이상의 휴학 및 휴교로 학부모전체 회의를 통하여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 전원의 동의하에 학급별 1인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, 각 학급별 대표는 희망자를 우선으로 하고 희망자가 미달인 경우 학교장이 지명한다.</u></p> <p>③ ~ ⑥ <u>현행과 같음</u></p>
<p>제38조 (위원의 자격상실) <u>위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. 단, 제3항, 제5항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.</u></p> <p>① ~ ⑤ 생략</p>	<p>제38조 (위원의 자격상실) <u>위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. 단, 제5항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.</u></p> <p>① ~ ⑤ <u>현행과 같음</u></p>
<p>제41조 (서류제출 요구) <u>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41조 (서류제출 요구) <u>운영위원회는 그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42조 (시행 의무 등) ① <u>학교장은 제40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한다. 다만,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신설</p>	<p>제42조 (시행 의무 등) ① <u>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한다.</u></p> <p>② <u>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·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40조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.</u></p>

<p>③ 신설</p>	<p>③ <u>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이사회 및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46조 (안건의 발의)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. 다만,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.</p>	<p>제46조 (안건의 발의)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. 다만,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.</p>
<p>제48조 (회의의 공개 등)</p> <p>① 생략</p> <p>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, 학교계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,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, 지역주민 등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생략</p>	<p>제48조 (회의의 공개 등)</p> <p>① <u>현행과 같음</u></p> <p>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, 학교계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,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, <u>교원</u>, 지역주민 등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<u>현행과 같음</u></p>
<p>제49조 (회의록 작성 등) ① <u>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.</u></p> <p>② 생략</p> <p>③ <u>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학교발전기금의 예·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49조 (회의록 작성 등) ① <u>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, 장소, 참석자, 안건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의 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.</u></p> <p>② <u>현행과 같음</u></p> <p>③ <u>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·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·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75조 (기간제 교원) ① 생략</p> <p>1 ~ 2. 생략</p> <p>3. <u>파면·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.</u></p> <p>4. 생략</p> <p>② ~ ③ 생략</p>	<p>제75조 (기간제 교원) ① <u>현행과 같음</u></p> <p>1 ~ 2. <u>현행과 같음</u></p> <p>3. <u>파면·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</u></p> <p>4. <u>현행과 같음</u></p> <p>② ~ ③ <u>현행과 같음</u></p>